



경기도의회 제389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 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713번)

2026. 4. 22.(수)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민수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10.
3. 회부연월일 : 2026. 4. 1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정보검색, 과제 작성, 콘텐츠 제작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의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나. 그러나 허위정보 생성,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청소년이 인공지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체계적 추진이 시급함.
-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조성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마.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교원 및 지도자 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사.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자.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Ⅲ. 절차 이행 여부

#### 1.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 결과

가. 입법예고(2026. 4. 3. ~ 4. 7.) : 수정 수용 1건(법제과-2226, 2026. 4. 9.)

나. 집행부 협의

-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의견 없음(청소년과-7037, 2026. 4. 9.)

## 2. 비용추계

### 가. 비용추계 미첨부(의회 예산분석과)

-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IV. 검토의견

### 1. 주요 내용 검토

#### 가. 제안취지와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청소년의 일상 전반에 보편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한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특히 도 차원에서 인공지능 윤리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하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음.
- 2024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생 5,7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지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9%가 생성형 AI 이용 경험이 있으며,<sup>1)</sup>고등학생의 경우 이용률이 74.5%에 달해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청소년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음.

-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 확산의 이면에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수반되고 있음. 사이버폭력 실태조사<sup>2)</sup>에 따르면 응답한 청소년 89.4%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폭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 이유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48.7%)’과 가짜 영상이나 사진들이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정교함(18.8%)<sup>3)</sup>,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피해를 겪을 수 있음(13.9%)’을 꼽았음.
-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인공지능 악용에 대한 윤리적 인식의 부재임. 교육부<sup>3)</sup>가 실시한 학교 딥페이크 관련 인식조사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발생 원인으로 ‘장난으로(54.8%)’를 꼽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정작 가해 청소년들은 이를 중대한 범죄가 아닌 단순한 놀이로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확인됨. 나아가 전체 응답자의 2.8%는 실제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도용되어 딥페이크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이 실질적인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육적 안전망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48.4%가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청소년(85.5%)은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함.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2024)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사이버폭력 실태조사」(p.62, 75, 76)

3) 교육부 보도자료(2024.12.12.),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 나아가 상위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인공지능윤리'가 명시되어 있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바,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주도적인 인공지능 윤리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볼 수 있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제11호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나. 개별 조문 검토

- 본 조례안은 전체 10개 조문으로 구성됨.

### <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인공지능 윤리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공지능 활용 문화 조성 및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청소년',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교육',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해 정의함
제3조	지원 대상	도내 거주 청소년 지원 대상 규정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선 지원 대상 범위 설정에 관한 근거 마련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
제5조	실태조사	정책 수립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객관적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청소년 인공지능 활용 실태 조사 근거 마련
제6조	지원 사업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공지능 윤리 교육 관련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청소년지도자 대상 인공지능 윤리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제7조	사무의 위탁	지원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8조	협력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제9조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에 대한 도민 인식을 제고
제10조	포상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및 저변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안 제1조(목적)**에서는 “경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본 조례안의 목적을 밝히고 있음.

- 과거 2000년대 초반 정보화 촉진 단계에서 정립된 ‘정보통신윤리’<sup>4)</sup>가 준

4)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 2002」 (p.433 ~ 438)

- 중·책임·정의·해악금지의 4대 원칙을 바탕으로 네티켓 확립, 저작권 보호, 사생활 보호 등 이용자의 규범 준수와 기본적 소양 교육에 주력했다면,
-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에 따라 논의되는 ‘인공지능 윤리’는 알고리즘의 편향성 판단, 데이터 주권 확보,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책임성 등 인간의 주체적 판단력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성’<sup>5)</sup>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
  -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청소년의 정보 습득 및 학업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는 현시점에서<sup>6)</sup>,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단순히 역기능 방지라는 소극적인 목적에서 탈피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역량이 자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



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탐색」(2017)  
 6) 한국과학창의재단, 「초·중등 인공지능(AI)교육 학교 적용 방안 연구」(2022)

- 결과적으로 본 조항은 ‘지원 체계 마련’이라는 실무적 수단과 ‘올바른 성장’이라는 가치적 목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조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향후 전개될 지원 사업과 예산 집행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데, 입법 취지 및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는 없음.

○ **안 제2조(정의)** 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인공지능”, “인공지능 윤리 교육”, “디지털 시민의식”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2조제1호**는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안 제2조제2호**는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는 관련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립된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 **안 제2조제3호**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제11호7)의 정의를 기

초로 하면서 본 조례의 핵심 가치인 “디지털 시민의식”을 결합하여 개념을 정립하고 있음.

- 정의 규정은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개념상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sup>8)</sup>.
-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이미 안 제1조(목적)에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안 제6조(지원사업)의 각호에 열거하고 있음. 즉 해당 용어는 사회 통념상 그 의미가 자명할 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목적 조항과 사업 조항 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함.
- 따라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은 조문 구성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익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제4호**는 “디지털 시민의식”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며,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데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을 갖추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8)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 p.92

- 자치법규 내에 이러한 개념적 범위를 명시하는 것은, 향후 안 제6조(지원 사업) 등에 따른 사업을 추진 시 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기능 습득 위주의 교육으로 치중되지 않도록 정책의 본질적 방향성을 견지하는 효과가 있음.
-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규정의 실익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지원 대상)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의 수혜 범위를 「청소년 기본법」<sup>9)</sup>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는 행정 관할 구역 내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개념을 이미 정의하고 있음에도, 본 조항에서 동일한 상위법령의 정의를 재차 기술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제2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

---

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정책적 지향점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2025. 12. 30.>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 다만 경기도교육청(법제과-2226, 2026. 04. 09.)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및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의식 함양, 교육자료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적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기존 조례들은 적용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재학생으로 국한하고 있어,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시설 이용 청소년 등 공교육 체계 밖의 도내 청소년들은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학교 및 해당 학교의 재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의 우선 지원 대상 명시는 제도적 중복이 아닌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책무 이행으로, 도내 모든 청소년에게 격차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 특히 본 조항은 앞서 제안 취지에서 살펴본 상위법령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도 차원으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는 정책 수립 의무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총칙 내 목적과 정의 규정 다음에 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sup>10)</sup>, 사무의 주체인 도지사의 책무를 먼저 선언한 후 그 효력이 미치는 대상과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조문 배열에 부합함.
- 따라서 안 제3조(지원 대상)와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의 순서를 재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실태조사)**는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도내 청소년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윤리의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한 것임.

- 이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 절차라 할 수 있음. 본 조항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10)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4」, p. 69

○ **안 제6조(지원 사업)**는 에서는 도지사가 청소년의 인공지능 윤리의 식 함양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연구 및 교육 자료 개발 △청소년지도자 대상 역량 강화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항은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넘어, 양질의 윤리교육 콘텐츠 개발부터 이를 직접 가르칠 전문 인력 양성까지 청소년 윤리교육에 필수적인 실질적 인프라 조성 근거를 마련한 것임.

- 특히 안 제5조(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본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의 실제 AI 활용 실태에 부합하는 맞춤형 윤리교육을 설계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임.

- 다만,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에 따른 윤리적 쟁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은 단발성 제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현행화가 필요함.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리 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사무의 위탁)**는 지원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임.

-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끊임없이 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현안을 적시에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분야임. 따라서 집행 부서에서 직접 수행에 따른 행정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관련 인프라와 전문가 네트워크가 축적된 외부 전문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공공기관 위탁은 도내 전역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교육 전달 체계와 보편적 서비스 품질 유지가 장점인 반면, 민간 위탁은 공공 부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과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실무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안 제2항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를 모두 명시한 것은, 이와 같은 주체별 비교 우위를 고려하여 사업 성격에 따라 수탁 주체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안 제8조(협력)**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민간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은 ‘재학생’에 국한된 교육청의 한계를 보완하

고, 기 개발된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교재를 학교 밖 및 가정 밖 청소년까지 지원하기 위한 것임. 이는 예산의 중복 투입을 방지하는 동시에 도내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 민간 전문 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은 도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의견을 결집하여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민·관 협업 거버넌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홍보)**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임.

-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논의와 가치 정립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범도민적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SNS, 유튜브, 메타버스 등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 수혜 대상인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디지털 시민 의식을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포상)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정책 추진의 실행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전문적인 역량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분야인바,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교육 현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을 독려하는 것으로서 그 실익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모범 사례를 도내 전역에 확산시켜 교육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본 조항의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2.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청소년의 인공지능 활용이 보편화된 현시점에, 딥페이크, 허위정보 생성 등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주체적인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과 같은 물리적 규제를 도입하는 흐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윤리 교육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유해 환경을 식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가장 능동적이고 본질적인 보호 조치라 할 것임.
- 또한, 기존 교육청 소관의 관련 조례들이 공교육 체계 내의 재학생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과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모든 청소년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책무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
- 아울러 실태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민간 전문성 활용,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조문에 규정하고 있는바,
- 본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이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교육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사전 입법영향 분석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2. 적법성/중복성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③ 해당없음
3. 비용/의견수렴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제정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반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제명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위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타 지자체 사례 해외사례	○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없음.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청소년의 건전한 인공지능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li> <li>○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li> <li>○ 또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이 조례안은 자치조례로서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사항이 없어 제정 가능함.</li> <li>○ 안 제6조의 지원사업 등에는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결 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임.</li> <li>○ 기타 수정 제안사항은 붉은 색으로 표시하였음.</li> </ul>
검 토 기 간	2026년 4월 1일 ~
검토 담당자	행정6급(입법조사관) 황 대 석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의 검토의견을 보내드립니다.

2026년 4월 9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 법제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귀하